


<b>보 도 자 료</b>		
 국토교통부	배포일시	2018. 7. 27.(금) / 총 5매(본문 3)
 주거복지로드맵	주택기금과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과장 황윤언, 사무관 박정란, 주무관 조승현</li> <li>• ☎ (044) 201-3341, 3349 / 1599-0001 (콜센터)</li> </ul>
 국토교통부가 함께 합니다 좋은일자리만들기	주택도시 보증공사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기금기획실장 정태선, 팀장 이정한, 차장 박호찬</li> <li>• ☎ (02) 3771-6231, 6233 / 1566-9009 (콜센터)</li> </ul>
보 도 일 시	2018년 7월 30일(월) 석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※ 통신·방송·인터넷은 7. 30.(월) 06:00 이후 보도 가능	

## 중소기업 취업 청년 전월세보증금 대출 지원 확대

- '17.12.1일 이후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들은  
최대 5천만원까지 4년간 연 1.2%의 고정금리로 대출 지원 -

□ 국토교통부(장관 김현미)는 『청년 일자리 대책(18.3.15 발표)』에 따라 지난 6월 25일(월) 출시한 중소기업 취업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\* 제도를 대폭 개선하여 오는 7.30(월)부터 새롭게 선보인다고 밝혔다.

\* ①만34세 이하, ②17.12.1일 이후 中企 신규 취업자 또는 중진공, 신·기보 청년 창업 지원 받은 자③연소득 3,500만원 이하④보증금 1억원(60㎡) 이하 주택+⑤5천만원 대출

### 【 중소기업 취업 청년 전월세 대출 제도개선 주요내용 】

구분	종 전	변경
① 대출대상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▶ '18.3.15 이후 중소기업에 생애 최초로 정규직으로 취업한 경우</li> <li>▶ 대출 신청인 소속기업이 중기업, 소기업 및 소상공인에 해당 시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▶ '17.12.1 이후 중소기업 취업하여 고용보험에 가입된 경우</li> <li>▶ 대출 신청인 소속기업이 대기업, 중견기업 및 공기업이 아닌 경우</li> </ul>
② 보증금 및 대출금 한도	▶ 보증금 5천만원 및 대출금 3.5천만원까지 지원	▶ 보증금 1억원 및 대출금 5천만원까지 지원
③ 보증	▶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 대출보증 의무화	▶ 주택도시보증공사 및 한국주택금융공사 보증 허용

## 1. 지원대상 확대

- 먼저, 중소기업 생애최초 정규직 취업기준을 완화하였다.
  - 현재, '18.3.15 이후 생애최초로 중소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청년에게만 대출을 지원하여, 과거 편의점 등에 1년을 초과하여 정규직으로 근무 경험이 있는 경우 대출 지원이 불가하였다.
  - 그러나, 금번 제도개선을 통해 '17.12.1 이후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이 고용보험 가입시 지원하는 것으로 확대하였다.
    - \* 중소기업진흥공단,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보증기금의 청년 창업 관련 보증 및 대출을 지원받은 경우에도 '18.3.15 이후에서 17.12.1 이후로 변경
- 아울러, 소속기업 확인절차를 간소화하여 소상공인, 소기업, 중기업 등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의 대출 이용 편의성을 제고하였다.
  - 그간 중소기업 확인서 등을 통해 대출 신청자의 소속기업이 중소기업인 것이 입증될 경우 지원하여, 중소기업 확인서 발급 신청을 하지 못한 중소기업의 취업청년은 대출 이용이 곤란하였다.
  - 이에 따라, 소속기업이 대기업(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), 중견기업, 공기업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모두 지원하는 방식으로 변경하였다.


## 2. 보증금 기준 완화 및 대출금 한도 상향

- 전월세보증금 기준을 완화하였으며 대출금 한도를 상향하였다.
  - 당초, 전월세보증금 5천만원 이하 주택에 3.5천만원까지 대출을 지원하였으나 전월세보증금 1억원이하 주택에 5천만원까지 대출을 지원하는 것으로 관련 제도를 개선하였다.

- 또한, 현재 시중은행의 전세대출을 이용하고 있는 차주가 중소기업 취업 청년 전월세보증금 대출제도에 부합하는 경우 지원하는 기금 대출 대환한도도 5천만원까지 상향하였다.

### 3. 보증기준 완화

- 중소기업 취업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은 전세금 미반환 위험과 저리의 대출보증을 동시에 지원하기 위해 주택도시보증공사(HUG)의 전세금 안심대출보증만 담보 취득을 허용하였으나
-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일반전세자금보증까지 담보 취득을 확대하여 대출 신청인의 선택권을 제고하였다.
  - \*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 이용 시 : 임차보증금의 100%까지 8천만원 한도로 대출
  - \* 한국주택금융공사 보증 이용 시 : 임차보증금의 80%까지 8천만원 한도로 대출
- “중소기업 취업 청년 임차보증금 대출상품”은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인 우리·국민·신한·농협·기업은행에서 신청 가능하며, 7월 30일 신청분부터 제도 개선된 혜택을 받을 수 있다.
-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“금번 조치로 중소기업 취업청년과 청년 창업자의 주거안정성 제고에 기여할 수 있을 것”이라며 “앞으로도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”이라고 전했다.



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 박정란 사무관(☎ 044-201-3341)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

\* 보다 자세한 사항이 궁금하신 경우 주택도시기금 포털 ▼로 검색하시거나 국토부 콜센터 ☎ 1599-000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구 분	주 요 내 용
대출 대상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▶ 대출신청일 현재 대출대상주택을 임차하고자 임차보증금 1억원 이하의 주택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% 이상을 지불한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</li> <li>1. 대출신청일 현재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(세대주예정자) 또는 세대주로 인정되는 자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* (세대주예정자) 본건 임차목적물에 세대주로 전입 예정인 경우에도 대출신청 가능 (대출실행후 1개월내 본건 임차목적물에 세대주로 전입한 주민등록등본 제출 필수)</li> </ul> </li> <li>2. 대출신청일 현재 세대주(예비세대주)로서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</li> <li>3. 대출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이 35백만원 이하인 자</li> <li>4. <u>2017.12.1.일 이후 중소기업(일부 제외)에 취업한 만 34세(병역법에 따라 현역으로 병역 의무를 마친 경우 만 39세) 이하 또는 중소기업진흥공단,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의 보증 또는 창업자금 지원을 받은 만 34세(병역법에 따라 현역으로 병역 의무를 마친 경우 만 39세) 이하의 세대주</u></li> </ul>
대출 대상주택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▶ 임차 전용면적 60㎡이하 주택(60㎡이하 주거용 오피스텔 포함)</li> <li>▶ 임차보증금 1억원 이하</li> </ul>
호당 대출한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▶ 50백만원 한도</li> <li>* 대출금액은 임차보증금 100% 이내에서 50백만원을 초과할 수 없음(단, 한국주택금융공사 보증의 경우 임차보증금의 80% 이내에서 50백만원을 초과할 수 없음)</li> </ul>
대환 대출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▶ '18.3.15일 이후 취업, 임대차 계약 및 은행전세대출 이용자 : 대환 및 이자 일부 지원</li> <li>▶ '17.12.1일 이후 취업자중 은행전세대출 이용자 : 대환</li> </ul>
대출기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▶ 2년(1회 연장, 최장 4년)</li> <li>※ HUG보증 이용에 따라 2년+1개월, 최장 4년 2개월 적용</li> </ul>
대출담보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▶ 주택도시보증공사 : 전세금안심대출보증서 담보(임차보증금의 100% 보증)</li> <li>▶ 한국주택금융공사 : 일반전세자금보증서 담보(임차보증금의 80% 보증)</li> </ul>
상환방식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▶ 만기일시상환</li> </ul>
대출금리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▶ 연 1.2% (고정금리)</li> </ul>

## 참고2

## (주택도시기금) 상담 및 문의 절차

Q) 기금대출을 어디에서 상담받고 신청할 수 있는지요?

① 대출 신청 前 자세한 상담이 필요한 경우 주택도시기금 포털을 방문하시거나 대출취급 은행 등의 콜센터 등에 문의

- 주택도시기금 포털(<http://nhuf.molit.go.kr/>)



- 국토교통부 콜센터(☎ 1599-0001)

- 5개 기금 수탁은행



- LH 마이홈상담센터 및 콜센터(☎ 1600-1004)

- 주택도시보증공사(HUG) 콜센터(☎ 1566-9009)

② 기금 취급은행 등에 방문하여 대출 상담 및 신청